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83
----------	-------

발의연월일 : 2026. 9. 15.

발 의 자 : 최은석 · 안철수 · 성일종
고동진 · 권영세 · 서명옥
김기웅 · 김태규 · 이종배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차·주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 위반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하나의 위반행위로만 보아 과태료가 단 1회 부과되는 구조임.

이로 인해 장기간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실제 부담이 적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위반 지속기간에 따른 가중 부과 근거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한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정차·주차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4항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고 차 또는 노면전차가 동일한 장소에서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합산하여 24시간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한다) 및”을 “해당한다),”로, “해당한다)의”를 “해당한다) 및 제4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호 및”을 “제10호,”으로, “해당한다)의”를 “해당한다) 및 제4항의”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0조(과태료)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160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도경찰청장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고 차 또는 노면전차가 동일한 장소에서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합산하여 24시간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
<u>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u> 1. ~ 4. (생략)	<u>⑤ 제3항 또는 제4항-----</u> ----- ----- -----.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1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도경찰청장 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호·제3호, 제50조제1항·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제3항 및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u>해당한다</u>)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u>해당한다</u>)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1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 ----- ----- ----- ----- ----- ----- ----- ----- 2. ----- ----- ----- ----- ----- ----- ----- ----- ----- ----- ----- <u>해당한다</u>),----- ----- ----- ----- ----- ----- ----- ----- ----- ----- ----- <u>해당한다</u>) 및 제4항의----- -----
---	--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제4호의5·<u>제10호</u>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u>해당한다</u>)의 과태료: 시장등 4. (생략) ② (생략)	3. ----- -----<u>제10호</u>,----- ----- ----- ----- -----<u>해당한다</u>) 및 제 <u>4항의</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